

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

「안전신문고 앱」으로 신고하는 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 변경에 대한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2. 3. 17.

속 초 시 장



1. 예고목적

「불법 주·정차 주민신고제」 운영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 협조 요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, 제33조(주차금지의 장소),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, 제160조(과태료)
- 나.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2호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
- 다.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8조제4항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 및 별표 7(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
- 라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,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24조의3(예고내용)

3. 예고내용 :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

가. 신고요건 변경

- 주민신고 촬영 당일 접수 → **촬영 익일(다음날)까지 접수**

나. 기타사항

- 사진 2장 외 추가 사진(안전신문고 촬영) 참조 허용
- 안전신문고 상 행정예고 연결주소(URL) 제공

※ 가. 항목은 안전신문고 상 5월 적용, 나. 항목은 즉시 적용

※ 참고. 신고대상(종전과 같음)

구분	주민신고 가능구간	운영시간	촬영 간격
5대 구역	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	24시간	1분
	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		
	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,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		
	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		
	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	평일 08~20시 토,일,공휴일 제외	

4. 시 행 일 : 2022. 5. 2.(화)

5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2. 3. 17. ~ 2022. 4. 6.(20일간)

6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okcho.go.kr/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 2)를 속초시청 교통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, 반대 시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방법 : 방문, 전자우편(kheel13@korea.kr) 또는

팩스(033-633-5006)

라. 문의 : 속초시 교통과 교통지도팀(033-639-2068)

※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속초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